

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

2014. 10. 17.(금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10.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4. 10.

라. 상정일자 : 2014. 10. 13.(제21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)

- 제안설명 : 건설교통국장 강 상 석
-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 현 기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정부조직법」의 개정(2013.3.23.)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수도권교통조합 규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조합회의 제6조 제2항, 제6조 제3항 4호, 5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「정부조직법」의 개정으로 변경된 중앙행정기관 명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.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김금용, 김경선, 신은호, 최석정, 손철운, 이도형, 황인성 의원
- 나. 반 대 : 없음.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.(재석위원 : 7명, 찬성 : 7명)

7. 기타

- 특이사항 없음

- 붙임 1.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

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중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제6조 제3항 제4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

제6조 제3항 제5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

부 칙 <2014. . . .>

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의회, 인천광역시의회,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안전행정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<p>제6조(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조합회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서울특별시 5인, 인천광역시 3인, 경기도 5인, <u>국토해양부</u> 2인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09.10.22>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<개정 2009.10.22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조합원의 교통업무 담당 국장 각1인 2. 조합원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교통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각1인 3.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교통관련 전문가 서울특별시 3인, 인천광역시 1인, 경기도 3인 4. <u>국토해양부</u>의 광역교통 담당 국장 1인 5. <u>국토해양부장관</u>이 추천하는 교통 관련 전문가 1인 	<p>제6조(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<u>국토교통부</u>----- -----.</p> <p>③-----.</p> <p>1. 2. 3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국토교통부</u>-----</p> <p>5. <u>국토교통부</u>----- -----</p>